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숲길로 조성된 국유림에 풍력 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대부등을 하려는 경우 일률적으로 해당 숲길을 대신할 수 있는 숲길의 노선을 지정·고시하도록 되어 있어 산림이 추가로 훼손되고 행정력의 낭비가 초래되며, 숲길이 풍력 설비의 규제사항으로 작용함에 따라 숲길의 지정 목적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해당 숲길을 대신할 수 있는 숲길의 노선을 지정·고시하지 않아도 대부등이 가능하도록 하고, 국유림의 대부등을 받은 자에게 징수하는 국유림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분할납부 횟수를 확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숲길의 국유림 대부등 기준 명확화(안 제17조제2항제2호 단서 신설)

숲길이 조성된 국유림에 풍력설비 설치를 위해 대부등을 할 때 종전에는 ‘해당 숲길을 대신할 수 있는 숲길의 노선이 지정·고시’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숲길의 지정 목적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해당 숲길을 대신할 수 있는 숲길의 노선이 지정·고시’를 하지 않아도 대부등이 가능하도록 함

나. 국유림 대부료 및 사용료 분할납부 횟수 확대(안 제22조제1항 전단)

국유림 대부료 및 사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전에는 ‘연 6회 이내’에서 나누어 낼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연 12회 이내’에서 나누어 낼 수 있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숲길의 지정 목적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제1항 전단 중 “6회”를 “12회”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료등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대부료등을 부과·고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의해 해당 숲길을 대신할 수 있는 숲길의 노선이 지정·고시될 것 <단서 신설> ③ (생략) 제22조(대부료등의 분할납부 등) ①법 제23조제2항 전단에 따라 대부료등을 분할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이 50만원 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연 6회 이내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른 고시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② (생략)	----- ----- -----. 다만, 숲길의 지정 목적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현행과 같음) 제22조(대부료등의 분할납부 등) ① ----- ----- ----- ----- 12회 ----- ---. ----- ----- ----- ----- -----. ②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산림청 국유림경영과	
연 락 처	(042) 481 - 4098